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해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987

발의연월일: 2024. 8. 20.

발 의 자:이해민 · 민병덕 · 김준형

김선민 • 서왕진 • 한민수

김재원 · 신장식 · 조 국

강경숙 • 박은정 • 김우영

황운하 • 정춘생 • 차규근

의원(15인)

제안이유

최근 창의성·전문성이 내재된 콘텐츠를 제작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하는 디지털크리에이터가 증가하고 있음.

특히 크리에이터 미디어 분야는 2022년을 기준으로 매출액 4.1조원, 종사자 3.5만명으로 크게 성장했고, 다른 사업에 비해 청년 비중이 높 아 청년 일자리 창출의 핵심 분야로 떠오르고 있음.

그러나 국내 크리에이터 사업체는 대부분 10인 미만으로 영세하고 크리에이터는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 거래·계약 시 불공정 계약으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크리에이터 미디어 분야의 공정한 계약과 건전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국내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발전

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디지털크리에이터를 육성하고 그성장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함(안 제1조).
- 나. 디지털크리에이터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및 우수인력 발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다. 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에 관한 사업화, 해외시장진출 지원 및 디지털크리에이터에 대한 금융 지원, 작업환경의 개선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 라. 디지털크리에이터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 전담기관 및 지원센터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 마.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행동강령, 자율적 가이드라인 마련· 시행에 관한 근거와 서비스제공 사업자와 크리에이터 간 상호 이익 증진을 위한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17조 까지).
- 바. 크리에이터와 계약 당사자 간 공정계약 체결을 위한 표준계약서 마련 근거 및 전담기관·지원센터 지정을 통한 관리·감독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함(안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디지털크리에이터를 육성하고 그 성장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디지털크리에이터"란 1인 이상의 창작자 또는 사업자(공동사업 자를 포함한다)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창의성·전문성이 내재되어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이 포함된 자료 또는 정보를 제작·유통하는 자를 말한다.
- 2. "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서비스"란 디지털크리에이터가 제작한 자료 또는 정보(이하 "디지털크리에이터 제작물"이라 한다)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에게 전송하거나 이를 유통·관리할 수있는 수단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3. "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서비스제공사업자"란 디지털크리에이터 미디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 당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디지털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 제4조(재원의 확보 및 지원대상) ① 정부는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예산,「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 전기금 등으로 이 법에 규정된 사업의 추진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 1. 1인 이상의 창작자
 - 2. 1인 또는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지원대상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교육훈련 지원 및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①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은 디지털크리에이터 및 디지털크리에이터가 되고자 하 는 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크리에이터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디지털크리에이터 활동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 · 운영할 수 있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및 제2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우수 인력의 발굴 및 육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크리에이터 제작물이 제작·유통·이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우수 인력의 발굴 및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사업화 지원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크리에이 터의 육성을 위하여 디지털크리에이터 제작물의 사업화를 위한 지 원을 할 수 있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크리에이터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 통신융합 기술·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해외진출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크리에이터 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1. 디지털크리에이터 관련 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 2. 디지털크리에이터 관련 국제박람회 등의 개최
 - 3. 디지털크리에이터 관련 국제행사 참가 지원
 - 4. 방송 · 인터넷 등을 통한 해외 마케팅 · 홍보활동
 - 5. 그 밖에 디지털크리에이터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제9조(금융 지원) ① 정부는 디지털크리에이터 및 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서비스제공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투자하거나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디지털크리에이터 및 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서비스제공 사업자의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하여 「신용 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으로 하여금 디지털크리에이터 및 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서비스제공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증

제도를 수립 · 운용하도록 할 수 있다.

- 제10조(작업환경의 개선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지털크리에이터 작업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1조(실태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디지털크리에이터의 활동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디지털크리에이터, 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서비스제공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디지털크리에이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디지털크리에이터 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정부는 디지털크리에이터 및 디지털크리에이터를 하고자 하는 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디지털크리에이터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디지털크리에이터에 대한 작업공간 및 회의장 제공
 - 2. 디지털크리에이터에 대한 경영·법률·세무 등의 상담
 - 3. 디지털크리에이터 간의 교류활동 지원
 - 4. 디지털크리에이터 제작물의 사업화 지원을 위한 국내외 동향 분석
 - 5. 그 밖에 디지털크리에이터 지원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관련 법규 및 지정 조건을 위반하여 사업을 수행한 경우
- 3.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⑤ 그 밖에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유통환경) ① 디지털크리에이터, 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서비스제공사업자 및 관련 사업자단체(이하 "디지털크리에이터등"이라한다)는 건전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동강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② 디지털크리에이터등은 유통되는 디지털크리에이터 제작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사전교육, 모니터링 등 자율적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1.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에 따른 불법정보
 - 3. 그 밖에 디지털크리에이터 제작물의 건전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디지털크리에이터등의 건전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상생협력 촉진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크리에 이터와 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서비스제공사업자 간 상호이익의 증

- 진 및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지털크리에이터와 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서비스제공사업자 간의 상생협력을 유도하는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상생협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디지털크리에이터와 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서비스제공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 제16조(협약체결의 권장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크리에에이터와 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서비스제공사업자가 디지털크리에이터 제작물 관계법령의 준수 및 상호 지원·협력을 약속하는 자발적인 협약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크리에이터와 디지털크리에이 터미디어서비스제공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이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협약의 내용·체결절차·이행실적 평가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시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상생협력 기여자 선정·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크리에이터와 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서비스제공사업자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생협력에 기여한 자를 선정하고 포 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상생협력 기여자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지원시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디지털크리에이터 제작물 등 관련 계약) ① 디지털크리에이터 활동 및 제작물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 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
 - 1. 계약기간 · 갱신 · 변경 및 해제 · 해지에 관한 사항
 - 2. 계약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 3. 수익의 분배에 관한 사항
 - 4.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계약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디지털크리에이터 활동 및 제작물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가 제 19조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 제19조(표준계약서의 제정·보급)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정 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디지털 크리에이터 활동 및 제작물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디지 털크리에이터등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 관련 사업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권고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디지털크리에이터등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재원 지원 및 제9조에 따른 금융지원을 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다.
- 제20조(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서비스 제공 관련 준수사항) ① 디지털 크리에이터미디어서비스제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디지털크리에이터 제작물의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한 상태를 확보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
 - 2. 디지털크리에이터 제작물을 제공하기 위한 거래에서 당사자 간에 적정한 수익배분을 하도록 노력할 것
 - 3. 디지털크리에이터 제작물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 대방에게 수익배분 방식, 계약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한 사항을 충분히 설명 또는 고지할 것

제21조(보고·검사) ① 정부는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②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천센니에 내아여 그 납수 및 세간에 된던 모고 또는 자료의 세물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22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 또는 지원센터에 위탁할 수있다.
- 제2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담기관 또는 지원센터의 임직원은 「형법」 제

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